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공사에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지장물 철거, 토석의 운반, 사토 운반, 가시설공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

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해체하는”을 “해체하거나 철거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모래·자갈채취공사”를 “모래·자갈채취공사, 토석·사토의 운반, 가시설공사(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) ① 수급인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,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다. 다만,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. 단순암반절취공사, 모래·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	제4조(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② ~ ④ (생략)	1. ----- <u>해체하거나 철거하는</u> ----- 2. ----- <u>모래·자갈채취공사, 토석·사토의 운반, 가시설공사(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)</u> 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